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학과만족 및 진로에 미치는 영향

- '법과 사회'를 이수한 법과대학 신입생을 중심으로 -

최민식(이화여자대학교 조교수)

김미미(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

《 요약 》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새로이 도입·실시된 과목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인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목표 중에서 '진학 혹은 진로탐색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그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과 심화선택과목의 하나인 '법과 사회' 과목의 진학 혹은 진로교과성에 주목하여, '법과 사회' 교과의 학습경험에 대한 효과성을 학과만족과 진로준비의 차원에서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시사점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지역 소재 5개 법과대학 1학년 457명을 대상으로 하여 '법과 사회' 이수 유무 및 교과목 선정의 학생선택권의 유무에 따른 학과만족도 및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과목선택권이 학생에게 주어졌는지의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 '법과 사회' 이수집단은 비이수집단에 비하여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학과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법과 사회' 교과목 선정에 대한 학생선택권 유무를 분석에 포함시켜 살펴본 결과, 학생선택권이 있는 경우 '법과 사회' 이수집단과 비이수집단 간에 학과만족도 및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학생선택권이 없는 경우에는 과목의 이수 여부가 학과만족도나 진로관련 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합리적인 진로선택이 가능하도록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 확대가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실효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하겠다.

주제어 : 선택중심 교육과정, 심화선택과목, 법과 사회,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 학과만족도,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수준

I. 서론

지식정보사회의 발달로 현대사회에서 직업은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진로의 선택은 개인의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국가의 인적자원 개발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학교교육에서 진로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개인의 진로선택은 일회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발달하는 일련의 의사결정이다. 진로발달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 초기의 선택이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이다(Buchler, 1933; Lamann & Witty, 1942; 이제경, 1997, p. 10 재인용). 더불어 장래 직업에 대한 모색과 함께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인 고등학교 시기의 학교교육은 개인의 합리적인 진로결정과 준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식정보사회의 발달로 인한 급속한 직업세계의 변화와 이러한 흐름에 맞는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해 제7차 교육과정은 구성주의 교육관에 기초하여 세계화·정보화·개방화 시대의 사회를 주도할 시민적 자질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표방하면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진재관 외, 2006). 특히 고등학교 2, 3학년 과정의 과목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확대하고 진로계획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학습경험을 갖도록 하였다. 이는 학습자중심의 교육실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며, 교사는 심화선택과목의 교과지도를 통해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해주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 및 직업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고교를 졸업하는 절대 다수가 대학에 진학하는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고등학교 2, 3학년 시기의 선택중심 교육과정하의 심화선택과목들은 대학입학전형과 관련하여 불 때 학교급 간 교육과정이 상호연계되어 있어 학업진로와도 매우 상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홍후조, 2005a). 통계청의 2006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5년도 일반계 고교 졸업생의 93%,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62.3%인 동 연령층의 81.4%가 대학에 진학하여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 준비과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양적팽창과 입시과열로 인해 많은 수의 신입생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 및 학교나 학과에 대한 이해 없이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어 상당수의 학생들이 입학 후의 전공 학과에 대한 부적응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시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학생, 학부모는 학교교육 및 교사의 교육서비스 중 학생의 장래를 결정하는 진학 및 진로지도에 가장 큰 불만을 나타냈다. 최근에는 학과분화 및 학부제로 인해 학과 선택의 시기가 다소 유예되었으나 학과나 계열 선택의 문제는 여전히 대학생들의 중요한 고민이며, 학과나 계열변경이 미국보다 자유롭지 못한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현

실에서 학과나 계열은 대학생생활과 그 이후의 진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하혜숙, 1999). 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이후 진로에 영향을 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학부제하에서도 사실상 학과제와 별 차이가 없이 대학입시 때 전공을 결정하게 되는 독립형 학부(예를 들면 법학부나, 경영학부, 전자공학부)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손홍숙, 2001), 대학진학시의 전공학과 선택은 향후 진로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적성이나 흥미, 개인차를 고려한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장문영, 2004). 이에 제7차 교육과정에서 ‘진로 및 직업’이 편성되었으나, 교양선택과목이기 때문에 정규과목으로서의 진로교육 실시는 학교마다 상이할 수밖에 없어 구심체가 없이 산발적으로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이영대, 2002). 2006년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일반계 고등학교 1,437개 교 중 13.7%인 198개 교만이 ‘진로 및 직업’ 교과를 개설하였고, 진로지도과목으로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제7차 교육과정은 ‘폭 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을 인간상의 하나로 상정하고, 초·중·고 학교급별로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일관성 있게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진로계획단계인 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심화선택과목의 진로교과로서의 위치와 중요성을 알 수 있다(이영대 외, 2004). 또한 “진로교육은 교과수업을 통한 교육이었다.”라는 김영진(1994)의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진로교육은 교과내용과 통합하여 지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2, 3학년 시기의 심화선택과목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해주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 및 직업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게 하는 진로탐색교과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법과 사회’는 그 체계상 완결성을 지닌 독립된 교과로 법과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교육적 연계를 이루고 있는 선수 학습과목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과대학은 대학입시 때 전공을 결정하게 되는 독립형 학부이다. 따라서 ‘법과 사회’ 교과목은 대학법학수업의 예비단계로서 법학체계에 따른 교육으로 다른 사회과 심화선택과목에 비해 교과 특수적이며, 진로탐색교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법과 사회’의 진로교과성에 주목하여 법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진로 계획단계인 고등학교 2, 3학년 시기의 ‘법과 사회’의 이수 유무 및 학생의 과목선택권 유무에 따른 학습경험의 효과성을 학과만족과 진로모색 차원에서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심화선택과목을 통한 진로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함이다.

제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와 운영지침, 교육과정 편성운영방안 연구, 개별 심화선택과목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진로교육과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는 많이 전개되지 못했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진로지도방안에 대한 연구(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2000; 양운택, 2003; 이영대, 2002; 조만택, 2002)가 이루어졌으나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사회과 선택과목 중의 하나인 ‘법과 사회’ 과목에 초점을 맞추어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제시함으로써 그동안 미흡했던 이 분야의 연구를 보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 이수 여부가 대학진학 후 학과만족도 및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법과대학생 중 ‘법과 사회’ 과목을 이수한 집단과 이수하지 않은 집단의 차이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선택과목의 선택이 전적으로 학생 개인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을 반영하여, 선택과목 이수 여부가 대학진학 후 학과만족도 및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학생에게 과목선택권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과목선택권이 갖는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논의가 전개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방법이 설명되고, 4장에서는 실증연구의 결과가 제시되며 그에 따른 해석이 이루어진다. 5장에서는 논의를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Ⅱ . 이론적 배경

1.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교육적 의의

제7차 교육과정에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한 취지는, 획일적이고 폐쇄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으로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력과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정보화시대에는 질적성장과 고객의 요구만족이라는 전제 아래 다양성과 창의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개개 학습자들의 요구와 특성을 존중하고 교사중심의 학습에서 학습자중심의 학습으로의 전환, 학습자의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2, 3학년 단계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필요, 흥미, 적성, 수준, 진로 등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개인차를 높은 수준으로 고려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진재관 외, 2006).

선택중심 교육과정과 관련한 사항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목 선택권의 주체이다. 제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의사결정의 수준과 주체를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

학생으로 분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들에게 과목선택권을 허용함으로써 교육내용의 개인적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02).

제5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교육부와 학교만이 선택주체였다가, 제6차에서는 시·도 교육청이 추가되었고, 제7차에서는 학생이 중요한 선택의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상 처음으로 학생에게 실질적인 ‘과목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점과 학생을 일차적인 주체로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재춘 외, 2001). 교육과정 편성에서의 선택의 확대는 일차적으로 교육과정을 통해 제공되는 교육적 경험이 학습자 개인의 능력과 적성 또는 진로 등에 보다 적합한 것이 되도록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적합한 교육과정의 편성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제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선택의 확대 정책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황규호, 2003).

학생의 과목선택권은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안내된 선택’을 의미하며, 학생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선택, 적성과 소질에 맞는 선택, 자신이 좋아하고 요구하는 선택, 자신의 진로에 맞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생의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선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택할 대상이 합리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구조화되어야 한다(홍후조, 2000). 따라서 학생 개인에게 선택과목에 대한 충분하고 체계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소질, 적성, 흥미와 능력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준비해야 한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학생 스스로의 선택에 근거하여 이수과정을 구성하므로 자율성의 함양, 적성의 발견과 신장, 학습의 효율성을 높여 학업성취도의 향상과 배움의 진정한 가치와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며, 고등학교 교육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02).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주로 실험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실체를 연구한 보고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 수행된 연구를 선택중심 교육과정 시행 전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3년 선택중심 교육과정 시행을 앞두고 이루어진 연구들로는 ‘선택’의 의미와 주체에 관한 연구(홍후조, 2000, 2002; 소경희, 2002), 전반적인 편성·운영과 모형개발에 대한 연구(강영석, 2002; 홍후조·박순경, 1998; 강창동 외, 2002; 소경희, 2003), 외국의 선택교육과정과 비교한 연구(강현석, 2003) 등이 있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시행된 이후에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대한 실태보고 및 분석,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백인기, 2003; 진재관 외, 2006)가 주를 이루었고, 수학교과, 물리교과, 제2외국어교과 등 개별 심화선택과목과 관련된 연구(정옥순, 2003; 최현순, 2003; 이현주, 2002; 이혜심, 2004)들이 이루어졌다. 특히 사회과 연구로는 최기중(2003)이 사회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를 학생들의 선호도 조사에 기초하여 분석하였고, 주은옥(2004)은 심층면접을 통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사회과 과목 선택 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관련 주체 간의 상호작용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2. 심화선택과목의 진로지도성 및 대학교육과의 연계성

전체 교육시스템 내에서 고교교육과 고교학습의 기능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두 가지 관점이 대립하여 유지되고 있다. 유·초·중학교의 연장선상에서 고등학교교육을 일반 보통교육을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는 교육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이와는 분리하여 고등학교교육은 유·초·중학교의 연장선에서 이어지지만 무엇보다 대학 및 대학원과 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 고교는 일반 보통교육이라기보다는 학생의 적성, 능력, 진로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는 적성과 진로개척교육으로 보는 관점이다(홍후조, 2005a).

고교를 졸업하는 절대 다수가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나라의 최근 상황에서 고등학교에서의 학습은 대학에서의 학습을 위한 기초적인 준비단계로서 선행학습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고등학교(high school)는 고등교육(higher education)을 위한 예비학교로 출발하였고, 이러한 흔적은 유럽에서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최고 학년에는 대학 교양과목에 해당하는 학습을 하는 것이나 미국 고등학교의 AP나 국제 통용의 IB에서 찾아 볼 수 있다(홍후조, 2005a). 우리나라는 제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들의 진로, 소질, 적성, 흥미 등과 관련한 과목을 선택하여 그러한 과목들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다(소경희, 2002). 이는 소과목 심층학습으로 대학의 전공기초에 해당되어 대학교육과의 연계성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정옥순(2003)은 심화선택과목과 대학교육의 연계성을 인식하고 ‘학생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게 수학 선택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결답안으로 각 대학의 전공 이수에 필요한 수학과정을 분류하고 정리하였다.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진로나 적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사에게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 점에 의의가 있다. 홍후조(2005b)는 상이선택 교육과정의 실현방안 연구에서 고교 졸업자의 절대 다수가 대학을 진학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보통 교양교육이 강조되어 온 고교교육에서 더 나아가 선택과 집중, 강점강화의 진로탐색과 결정을 돕는 교육과정의 실현을 모색하였다. 고교교육과정을 대학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고교생들이 대학을 진학해서도 학습을 성공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하면서, 고교교육이 보통교육, 전인교육, 일반교육뿐만 아니라 청소년 후기의 특성에 맞게 진로탐색과 진로결정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3. 사회과 심화선택과목 ‘법과 사회’의 진로교과성

제7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심화선택과목은 국민공통기본 교과에 대한 학습과 일반선택과목에 대한 학습을 기초로 각 교과 영역별로 2~4과목씩의 심화선택과목을 두고 있다. 일반사회 영역에서는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목이 심화선택과목으로 개발되었다.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한 심화선택과목의 개설은 학생들의 흥미 및 장래 진로를 반영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특히 ‘법과 사회’는 미국의 고등학교 생활법 과목인 Street Law와 유사하며, 그 체계상 독립된 교과로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에서의 법교육에 비해 체계적이다. 교과 독립이라는 형식적인 변화 외에도 일상생활 속의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주제 위주의 구성으로 학습내용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으며, 법적 쟁점이나 관련 법적 사례를 직접 탐구하게 함으로써 법적 문제해결력의 함양을 강조하는 실용적 법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법무부, 2006). 제7차 교육과정에 들어와 신설된 ‘법과 사회’는 법교육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고, 2000년대 이후 법무부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의 법교육에 대한 의지가 맞물리면서 법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 2005년부터는 법무부가 법교육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청소년 생활법 교재 편찬, 고교생 모의법정 경연대회 개최, 생활법 교사직무연수, 법교육 전용 홈페이지인 사이버 법교육센터의 구축, 초·중·고 교사별 학습콘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법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하기 위한 한국법교육센터가 설치되는 등 발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 사회과에서의 법교육(Law-related education)은 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한 법학교육(legal education)과는 다르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1978년 제정된 법교육법(Law-related Education Act)에서는 법교육을 “법률가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법 전반, 법의 형성과정, 법제도와 그것들이 기초를 두고 있는 원리와 가치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제공하는 교육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법무부, 2006). 대다수의 법교육학자들은 법교육의 의미를 ‘복잡하고 가변적인 현대 사회에서 법과 법적 쟁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기초지식, 기능, 가치관과 태도 등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는 학습경험’으로 보고 있다(Gerlach & Lamprecht, 1975, pp. 4-5; 박성혁, 1998, p. 59 재인용). 사회과 교육학자들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법교육을 이해하고 있다(Jarolimeck, 1986; Savage & Armstrong, 1996; Banks & Banks, 1999). 우리나라 학교의 법교육의 주된 목적도 학생들을 법률전문가로 육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반복·암기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다. 법교육의 주된 목적은 바로 학생들이 하염없이 우리 사회의 가치를 이해하며, 사회 문제와 갈등을 좀 더 비판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법과 법질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되거나 획일적인 사고를 극복하여 우리 사회와 법 제도 그리고 정부의 활동 등에 참여하려

는 의욕 및 능력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따라서 이러한 법교육에 대한 기본 인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법교육 관련 선행연구는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첫 번째, 법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논의, 두 번째, 법교육의 내용에 대한 논의, 세 번째, 법교육의 효과에 대한 논의, 네 번째 법교육 방법론에 대한 논의이다¹⁾.

이처럼 기존 사회과의 법교육에 대한 논의들 가운데 심화선택과목으로서의 ‘법과 사회’를 학생들의 적성, 흥미 및 장래 진로를 반영할 수 있는 수요자중심,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정립을 위한 진로탐색교과로 다룬 연구는 없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사회과 심화선택과목으로서의 ‘법과 사회’는 교양 증진, 현실생활 이해와 진로탐색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성격은 얼핏 보면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즉, 교양 증진으로서의 법과 사회는 법적 태도와 의식, 생활법 지식을 강조하는 반면 진로탐색의 측면에서는 대학 법학수업의 예비단계로서 법학 체계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접근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며 보다 심화된 법학적 내용을 통한 시민성 함양이라는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진재관 외, 2006). 학업 및 직업진로의 측면에서 볼 때, ‘법과 사회’는 법학예비단계의 수업으로 진로탐색교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택과목으로서 ‘법과 사회’ 과목을 피교육자들의 선택동기 중 ‘진로탐색’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선택과목인 ‘법과 사회’의 학습경험은 법과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게는 후속학습인 법학과 수업의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학과만족도 및 진로의사결정수준,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수준 전반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 도입·실시한 심화선택과목 제도의 효과성 분석, 특히 진로탐색교육이라는 목표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법과 사회’ 과목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1)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법무부 산하 법교육연구위원회가 발족되고 법교육학회가 출범되는 등 법교육이 활성화되기 이전의 연구들로 미국의 법교육운동 사례를 들어 법교육의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허종렬, 1992; 이기우, 1993)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대륙법 국가인 우리나라의 법문화를 고려하기보다는 영미법계의 생활법으로서의 법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며, 법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한국의 법교육의 현황 및 실태파악을 통한 발전적 전망들이 논의되고 있다. 두 번째는 법교육의 내용체계,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 분석 및 개선에 대한 논의(최인화, 1992; 박용조, 2000; 박성혁, 2005, 2006; 박성혁·김순희, 2004; 박성혁 외, 2005)들이다. 세 번째는 법교육이 학생들에게 본질적 지식 및 비판적 사고기능을 확장시키므로 법교육을 통한 법의식을 함양시켜 민주시민적 자질을 육성하는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이다. 특히 청소년의 비행 감소효과에 관한 연구(안병경, 2006; 곽한영, 2006)는 법교육이 학생들의 태도를 의미 있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본다. 네 번째는 법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교육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최인화, 1989; 박성혁, 1998; 이철희, 2002; 이수화, 2005)와 교사의 법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천과 개선에 관한 연구들(김각, 1995; 허종렬, 1996; 박용조, 2001; 유현아, 2005; 김정호, 2006)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표집대상으로 2007년 현재 서울지역 소재 5개 교의 법과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법과대학생을 선정하였다²⁾.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3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2004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단계별로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을 이수한 2005, 2006, 2007년도 고등학교 졸업생으로³⁾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표집대상

N = 457

구분		빈도 (%)
성별	남	178(38.9)
	여	279(61.1)
고등학교 졸업연도	2007년	351(76.8)
	2006년	87(19.0)
	2005년	19(4.2)
‘법과 사회’ 이수 유무	이수자	186(40.7)
	비이수자	271(59.3)
‘법과 사회’ 과목선택권	학생선택	216(47.2) ¹
	학교선택	240(52.5)

※ ¹은 결측값을 보인 한 사례를 제외한 수치이며, 457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백분율 값임.

2) 교육인적자원부(2006)에 의하면 전국에 법과대학은 223개 교가 있다. 총 재적학생은 70,615명, 여학생은 22,932명(32.47%)이다. 그 중 1학년 재적학생은 총 15,678명이며, 여학생은 5,222명(33.31%)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모집단에서보다 더 많다.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추정결과의 편의(bias)를 보정하기 위해 성별을 통제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3) ‘법과 사회’ 개설학교 현황(일반계 고등학교를 기준) 및 ‘법과 사회’를 선택한 수능능력시험 응시자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2005, 2006).

(단위 : 명)

	학교 수	학생 수	‘법과 사회’ 선택 수능 응시자 수
2004년	461	84,949	54,911
2005년	484	82,461	62,584
2006년	491	84,950	62,434

2. 관련 변수 측정방법

가. 학과만족도 지수

학과만족이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 과정의 산물’로서, 자신이 현재 소속된 학과가 자신의 생애의 이상이나 미래의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기준과 일치한다면 학과만족은 높은 것을 의미한다(하혜숙, 1999). 본 연구에서는 하혜숙(1999)의 학과만족도 검사도구를 기초로 3개 범주, 즉 전공학과 교과내용에 대한 만족, 전공학과 학문에 대한 일반적 관심에 따른 만족, 전공학과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따른 만족 요인으로 구성된 17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4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최소점수는 17점, 최대점수는 68점으로 높은 점수는 학과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대상 457명이 응답한 내용으로 학과만족도 검사 17개 문항 간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 α)가 .91로 나타나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항 간 신뢰도 검증의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학과만족도 문항 구성

연구도구		문항 수	문항 번호	신뢰도
학과 만족도	전공학과 교과내용	5	2, 3 4, 6, 7	.73
	전공학과 학문에 대한 일반적 관심	5	1, 5, 8, 9, 10	.86
	전공학과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인의 지각	7	11, 12, 13, 14, 15, 16, 17	.90
계		17	1~17	.91

나. 진로관련 지수

1) 진로결정수준 지수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수준이란 대학생들이 향후 자신의 진로·직업 등에 대한 확신의 정도로서 진로미결정과 확고한 진로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을 지칭하는 것이다(김봉환, 1997). 진로결정수준 지수는 Osipow 외(1980)가 개발한 진로결정 지수(CDS; Career Decision Scale)를 고향자(1992)가 우리 문화에 맞게 변형한 것을 사용하였다. 진로결정수준 검사도구는 개인의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확인하고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여 현재 경험하고 있는 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4점 척도의 자기보고식 문항 18개로 이루어져 있다. 채점은 문항 1~2와 문항 3~18을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문항 1~2는 확신척도, 문항 3~18은 미결정척도로 역채점하여 합산한다. Osipow 외(1980)가 보고한 본 검사의 검사-재검 사신뢰도는 .90 및 .82였고, 고향자(1992)의 진로결정수준 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는 내적합치도 .86, 반분신뢰도 .80, 검사-재검사신뢰도 .79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봉환(1997)의 연구에서도 사범대학생 2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내적합치도가 .8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표집대상 457명이 응답한 내용으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내적합치도 계수가 .893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도구임이 확인되었다.

2) 진로정체감 지수

진로정체감은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재능 등에 관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상(picture)을 의미한다(김봉환, 1997). 진로정체감 지수는 진로, 자신의 특성, 미래계획에 대하여 어느 정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Holland, Diger와 Power(1980)가 개발한 진로상황검사(MVS; My Vocational Situation)의 정체감 척도(Identity scale)를 김봉환(1997)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8개 문항으로 4점 척도이며, 역채점한 결과 최소점수는 18점, 최대점수는 72점으로 높은 점수는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봉환의 연구(1997)에서 사범대학생 293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정체감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가 .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표집대상 457명이 응답한 내용으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내적합치도 계수가 .904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도구임이 입증되었다.

3) 진로준비행동수준 지수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인지나 태도적인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을 의미한다. 즉,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 및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 등을 의미한다. 실질적인 예로는 자기자신 및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 진로목표 달성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및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기타의 활동 등이 있다(김봉환, 1997). 진로준비행동수준지수는 김봉환(1997)이 직접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6문항이며 4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최소점수와 최대점수의 범위는 16점에서 64점으로, 높은 점수는 진로준비행동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신뢰도 검증결과 내적합치도 계수가 .850으로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학생의 흥미, 소질, 그리고 진로에 적합하도록 구성하기 위한 것이며, 학생 스스로 만들어가는 능동적 교육과정으로 교육의 본질 구현에 적합한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강창동, 2004). 그러나 학생의 과목선택권은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과정, 즉 학교가 제공하거나 허용하는 교육과정의 틀 내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소경희, 2002).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이념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토대가 완전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선택권이 제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 유무가 아닌 ‘법과 사회’ 교과 이수 유무에 따른 이수집단과 비이수집단 간의 학과만족도 및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내용을 기초로 ‘법과 사회’ 교과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 유무에 따라 학생선택권집단과 학교선택권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학교선택권집단은 학생에게 교과목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단위학교의 시설 및 교원확보 등을 고려한 학교의 선택에 따라 ‘법과 사회’를 이수하거나 이수하지 않은 집단이다. 학생선택권집단은 학생에게 교과목 선택권이 부여된 ‘법과 사회’ 이수집단과 비이수집단의 학생들로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의 의미가 구현된 진정한 의미의 수요자중심, 학생중심교육의 주체라 할 수 있다. ‘법과 사회’ 교과에 대한 학생선택권집단과 학교선택권집단을 대상으로 ‘법과 사회’ 이수집단과 비이수집단 간의 학과만족도 및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1. ‘법과 사회’ 이수 유무에 따른 이수·비이수 집단 간의 차이

가. 학과만족도 및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수준의 차이

‘법과 사회’ 이수집단과 비이수집단 간의 학과만족도 및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수준의 차이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수준의 세 가지 진로관련 지수의 경우는 고등학교 재학 시 ‘법과 사회’를 이수한 집단이 이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과만족도의 경우는 이수집단과 비이수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법과 사회’ 이수 유무에 따른 이수·비이수집단 간의 차이

N = 457

변인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학과 만족도	이수	186	55.38	7.57	0.95
	비이수	271	54.68	7.83	
진로결정 수준	이수	186	54.33	9.00	2.57*
	비이수	271	52.17	9.16	
진로 정체감	이수	186	50.36	9.32	2.77**
	비이수	271	47.85	9.71	
진로준비 행동수준	이수	186	35.36	8.01	2.95**
	비이수	271	33.10	8.08	

** $p < .01$, * $p < .05$

구체적으로 ‘법과 사회’ 이수집단과 비이수집단 간 진로관련 지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진로 결정수준은 2.16, 진로정체감 2.55, 진로준비행동수준은 2.26으로 이수집단의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모두 통상적인 통계적 오차범위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학생의 과목선택권 유무에 따른 ‘법과 사회’ 이수·비이수 집단 간의 차이

가. 학생선택권이 있는 경우의 ‘법과 사회’ 이수·비이수 집단 간의 차이

사회과 심화선택과목의 하나인 ‘법과 사회’ 교과에 대한 선택이 전적으로 학생 개인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학교현장의 여건상 심화선택과목 전체를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최소과목을 선정하여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진정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실제로 선택권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선택권이 있는 경우에 이수·비이수 두 집단 사이의 학과만족도와 진로관련 지수가 차이가 있는지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학생선택권이 있는 경우의 ‘법과 사회’ 이수집단과 비이수집단 간의 차이 검증결과는 다음의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학생에게 과목선택권이 있는 경우, ‘법과 사회’ 이수·비이수 집단 간 평균의 차는 학과만족도 2.62, 진로결정수준 3.26, 진로정체감 4.23, 진로준비행동수준이 3.34로 나타나 학생선택권 유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법과 사회’ 이수·비이수 집단 간 평균의 차(진로결정수준 2.16, 진로정체감 2.55, 진로준비행동수준 2.2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의 과목선택권이 있는 경우 ‘법과 사회’ 이수집단과 비이수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학과만족도($t=2.33$, $p<.05$), 진로결정수준($t=2.51$, $p<.05$), 진로정체감($t=3.08$, $p<.01$), 진로준비행동수준($t=2.95$, $p<.01$)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학생선택권이 있는 경우 학과만족도 및 진로변인의 차이

N = 216

변인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학과 만족도	이수	147	55.59	7.41	2.33*
	비이수	69	52.97	8.36	
진로결정 수준	이수	147	54.87	8.84	2.51*
	비이수	69	51.61	8.93	
진로 정체감	이수	147	50.98	9.26	3.08**
	비이수	69	46.75	9.70	
진로준비 행동수준	이수	147	36.11	8.02	2.95**
	비이수	69	32.77	7.20	

** $p < .01$, * $p < .05$

표본집단 중 ‘법과 사회’를 이수한 학생은 186명이었으며, ‘법과 사회’ 교과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한 학생은 147명이었다. 그 중 70명은 ‘흥미와 적성’, 60명은 ‘진로와 직업’을 고려하여 ‘법과 사회’를 이수하였다고 응답했다. ‘법과 사회’ 교과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으나 ‘법과 사회’를 이수하지 않은 사람도 69명(결측값을 나타낸 1명은 제외)이 있었는데 이 중 25명은 ‘입시·성적과 관련 점수 취득이 어려운 과목’, 11명은 ‘교과내용이 어려움’, 이 외에도 9명은 ‘적성에 맞지 않고 특별히 흥미가 없음’, 8명은 ‘직업과의 연관성이 없을 것 같아서’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법과 사회’ 교과 선택기준을 살펴보면 학생의 과목선택권이 있었던 경우 ‘법과 사회’ 이수집단이 비이수집단보다 학과만족도 및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수준 모두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t검정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나. 학생선택권이 없는 경우의 ‘법과 사회’ 이수·비이수 집단 간의 차이

학생에게 과목선택권이 없는 경우 ‘법과 사회’ 이수집단과 비이수집단 간의 차이를 따로 살펴봤는데 이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의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법과 사회’ 교과목 선택권이 학생에게 주어지지 않고 학교에 있는 경우 ‘법과 사회’ 이수집단이 학과만족도 및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수준 모두에서 비이수집단과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t검정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5〉 학생선택권이 없는 경우 학과만족도 및 진로변인의 차이

N = 240

변인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학과 만족도	이수	39	54.56	8.19	-.535
	비이수	201	55.28	7.59	
진로결정 수준	이수	39	52.36	9.42	.013
	비이수	201	52.34	9.25	
진로 정체감	이수	39	48.03	9.27	-.108
	비이수	201	48.21	9.74	
진로준비 행동수준	이수	39	32.54	7.42	-.489
	비이수	201	33.24	8.38	

3. 학과만족도 및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수준에 미치는 각 변인의 영향력

이상에서는 ‘법과 사회’ 이수 유무가 학과만족도 및 진로관련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두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함으로써 살펴보았다. 대학생의 학과만족도 및 진로관련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고등학교 재학 시 ‘법과 사회’ 과목의 이수 유무 이외에 여러 요인이 있다. 예를 들면 성별, 대학진학 준비과정, 혹은 자신(혹은 부모가)이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 또한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설문조사의 한계로 인해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은 살펴볼 수 없었지만, 성별과 대학진학 준비과정이 학과만족도 및 진로관련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학생선택권집단의 종속변인에 미치는 각 변인의 영향력

학생에게 선택권이 있는 집단만을 대상으로 ‘법과 사회’ 이수 유무, 성별, 재수 유무를 함께 고려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학생선택권집단의 경우 ‘법과 사회’ 이수 유무, 성별, 재수 유무의 각 변인 중 ‘법과 사회’ 이수 유무만이 학과만족도 및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며, 성별과 대학 준비과정을 나타내는 재수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상수의 값이 상대적으로 크고 R^2 값이 작은 것으로 볼 때 ‘법과 사회’ 이수 유무, 성별, 그리고 대학 준비과정 이외에도 여러 요인들이 학과만족도 및 진로관련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성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본 연구의 표본대상 중 여학생의 비율이 실제 모집단에 비해 높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통계량의 편의(bias) 문제가 없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표 6〉 학생선택권집단의 종속변인에 미치는 각 변인의 영향력

N = 216

변인	학과만족도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수준
	B(β)	B(β)	B(β)	B(β)
‘법과 사회’ 이수 더미 ¹	2.610(.156)*	3.302(.172)*	4.140(.202)**	3.368(.199)**
성별 더미 ²	-.019(-.001)	-.421(-.023)	1.031(.054)	.032(.002)
재수 더미 ³	.475(.027)	-1.039(-.052)	1.415(.066)	-1.170(-.066)
회귀상수	52.641	52.518	45.331	33.386
F(df)	1.841	2.298	3.598*	3.204*
R	.159	.177	.220	.208
R ²	.025	.031	.048	.043

※ 1) ¹ ‘법과 사회’ 이수를 1, 비이수를 0으로 둔 가변수

² 남자를 1, 여자를 0으로 둔 가변수

³ 2007년도 졸업을 1, 2006년과 2005년 졸업을 0으로 둔 가변수

2) ** $p < .01$, * $p < .05$

나. 학교선택권집단의 종속변인에 미치는 각 변인의 영향력

학생 개개인이 선택하지 않고 학교가 선택권을 행사한 집단을 따로 살펴보았는데, 이들 집단의 ‘법과 사회’ 이수 유무와 성별, 재수 유무를 함께 고려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학교선택권집단의 경우에는 ‘법과 사회’ 이수 유무, 성별, 재수 유무 중 어떤 변인도 학과만족도 및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을 포함한 전체 모델의 설명력도 학과만족도 0.5%, 진로결정수준 1.4%, 진로정체감 0.6%, 진로준비행동수준은 0.5% 정도로 아주 미미하게 나타났다.

〈표 7〉 학교선택권집단의 종속변인에 미치는 각 변인의 영향력

N = 240

변인	학과만족도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수준
	B(β)	B(β)	B(β)	B(β)
‘법과 사회’ 이수 유무 ¹	-.666(-.032)	.138(.006)	-.121(-.005)	-.746(-.034)
성별 ²	.626(.039)	1.635(.084)	1.449(.072)	.481(.028)
재수 유무 ³	1.062(.055)	2.230(.096)	.980(.040)	-1.156(-.056)

변인	학과만족도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수준
회귀상수	54.024	49.961	46.910	34.014
F(df)	.403	1.103	.470	.425
R	.071	.118	.077	.073
R ²	.005	.014	.006	.005

※ ¹ ‘법과 사회’ 이수를 1, 비이수를 0으로 둔 가변수

² 남자를 1, 여자를 0으로 둔 가변수

³ 2007년도 졸업을 1, 2006년과 2005년 졸업을 0으로 둔 가변수

V. 결론 및 논의

대학교육이 보편화되고 있는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볼 때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한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심화선택과목은 학생들의 흥미 및 장래 진로를 반영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진로탐색교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제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사회과 심화선택과목의 하나인 ‘법과 사회’는 법적 태도와 의식, 생활법 지식을 강조하는 교양증진과 현실생활의 이해 외에 진로탐색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어 ‘교과지도를 통한 진로교육’의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과 심화선택과목인 ‘법과 사회’의 진로교과성에 주목하여 심화선택과목의 학습경험에 대한 효과성을 학과만족과 진로의 차원에서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몇 가지 논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목 선택권이 학생에게 실제로 주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살펴보았을 때, 학과만족도의 경우 ‘법과 사회’ 이수집단이 비이수집단보다 평균점수가 조금 높게 나타났을 뿐 t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수준에서는 ‘법과 사회’를 이수한 집단이 비이수집단보다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t검정 결과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고등학교 2, 3학년 시기에 ‘법과 사회’ 교과목의 학습경험은 진로정보 탐색을 위한 하나의 장이 된다. ‘법과 사회’ 학습경험은 동 교과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태도 및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학습동기를 높이며 진로탐색능력을 향상시켜 진로관련 변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Mitchell과 Krumboltz(1996; Swanson & Fouad, 1999; 황매향 역, 2005 재인용)도 학습경험을 개인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양운택의 연구(2003)에서도 교과담당 교사가 각 교과목의 중요성을 현실생활 또는 직업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좀 더 상세히 연구하여 학생들에게 공

유하게 하며, 각 교과별 관련 직업을 소개하고 현재 배우는 단원이 어떤 직업적 활동과 관련이 되는가를 알려줌으로써 진로교육의 매우 중요한 일부를 담당한다고 보았다.

둘째, ‘법과 사회’ 교과목에 대한 학생선택권이 있는 경우는 ‘법과 사회’ 이수집단과 비이수집단 간의 학과만족도 및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수준 모두에서의 평균 차이가 교과목 선택권이 학생에게 실제로 주어지지 않은 경우의 ‘법과 사회’ 이수집단과 비이수집단 간의 평균 차이보다 더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과 사회’ 교과목에 대한 학생선택권이 없는 경우에는 이수집단과 비이수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과 사회’를 진로교과의 측면에서 볼 때 무엇보다 ‘학생선택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결과이다. ‘법과 사회’ 교과에 대한 학습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학생의 교과목 선정에 대한 학생선택권이 선행되어야만 학생의 흥미,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진정한 의미의 수요자중심, 학생중심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itchell과 Krumboltz(1996; Swanson & Fouad, 1999; 황매향 역, 2005 재인용)는 개인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요인으로 개인의 타고난 유전적 능력, 환경적 조건과 사건, 학습경험, 과제접근 기술을 들고 있다. 환경적 조건으로는 일의 기회, 직업에 제공되는 보상, 노동법, 사회조직의 변화, 가족자원, 교육체제, 공동체 및 지역사회의 영향 등 12가지 환경조건의 범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볼 내용은 환경적 조건 중 교육체제이다.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조건에는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며, 계획된 것과 계획되지 않은 것도 있다.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교육환경적 요인은 교육기회의 박탈, 입학정책과 같은 교육관련 정책과 열악한 교육수준을 예로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표집대상 중 52.5%인 240명의 학생들이 학생의 선택이 아닌 학교의 교과선택에 의해서 ‘법과 사회’ 교과를 이수하거나 이수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이는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를 선택할 권리 혹은 교육기회의 박탈로 학생선택권의 불평등을 초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창동의 연구(2004)에서도 학교 규모와 지역별 차이로 인해 자신이 선호하는 교과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취지와도 어긋나며,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없는 학생은 대학입시체제에서도 구조적인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학생선택권이 제한되는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만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충분한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 교육여건에서라도 개별 학교들이 인근 학교와 연계하여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순회교사를 활성화하며,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를 활용하여 학생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원 배치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법과 사회’ 교과는 법무부 산하 법교육연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law-educator의 활용, 법과대학교 고등학교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법과 사회’를 가르칠 교사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등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법과 사회’ 교과에 대한 학생선택권이 있는 집단의 경우에는 ‘법과 사회’ 이수 유무, 성별, 재수 유무의 각 변인 중 ‘법과 사회’ 이수만이 학과만족도 및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수준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학과만족도 및 진로관련 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직업세계가 이전과 비교하여 여성에 대해 개방되어 있으며 여성에 대한 성 역할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직업관의 변화 바람이 법조계에도 불어 사법시험 여성합격률이 2004년 24.38%, 2005년 32.27%, 2006년 37.7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기초로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대상자 선정 및 연구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해 사례 수가 크지 않아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또한 법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2007년도 5월에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는데 평가시점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추후 ‘법과 사회’ 이수 유무 및 학생의 과목선택권 유무에 따른 법과대학생의 전 학년별 차이 검증연구 외에도 다른 사회과 심화선택과목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학과만족과 진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비교집단은 ‘법과 사회’ 이수 유무 및 선택권 유무에 따른 5개 법과대학 1학년을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일정 시점에서의 학과만족 및 진로관련 변인의 측정은 그 이전까지 있었던 사고와 경험의 총체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비교집단의 진로에 미치는 다양한 개인, 가정, 학교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법과대학생들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매개변인들을 통제하여 비교하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법과 사회’ 이수 유무 및 학생선택권 유무에 따른 집단 분류하에 ‘법과 사회’ 이수 유무, 성별, 재수 유무 변인만을 가지고 법과대학생들의 학과만족 및 진로관련 변인에 주는 차이 및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변인 외 ‘법과 사회’를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사, 교과서를 포함한 교재, 모의법정이나 자치법정과 같은 법교육 체험활동, 체7차 교육과정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교과와 같은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 고 문 헌

- 강영석 (2002).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편성방안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5(1), 1-19.
-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2000).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진로 및 과목 선택 안내 자료**. 춘천: 저자.
- 강창동 (2004).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14(2), 1-21.
- 강창동, 이광우, 소경희, 강익수 (2002).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강현석 (2003). 외국의 선택교육과정의 비교분석 및 정책상의 함의.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2), 327-356.
- 고향자 (1992). **한국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곽한영 (2006). **법교육이 청소년의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여자비행청소년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교육인적자원부 (2001).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4: 사회**.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 (2004, 2005, 2006). **교육통계연보**. 홈페이지 <http://cesi.kedi.re.kr> (검색일: 2007. 3. 25).
- 교육인적자원부 (2005).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결과**.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검색일: 2007. 07. 17).
- 김 각 (1995). 교사양성 대학에서의 법관련 교육과정: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법연구**, 1, 149-162.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영진 (1994). 인문계 고등학생의 진로선택과 결정: 실태조사 결과. **학생생활연구**, 9, 39-71.
- 김재춘, 박소영, 이상신, 이상승, 길만철 (2001).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적용방안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김정호 (2006). **교사 등 법교육 관련자 전문성 강화 지원방안**. 서울: 법무부 법교육연구위원회.
- 박성혁 (1998). 사회과교육에서의 법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사례연구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사회와 교육**, 26, 57-70.

- 박성혁 (2005). 법교육의 본질관에 입각한 ‘법과 사회’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분석 연구. **시민교육연구**, 37(1), 55-80.
- 박성혁 (2006). 한·미 고등학교 법교과서 비교 분석을 통한 법교과서 개선 방안 연구. **시민교육연구**, 38(3), 39-61.
- 박성혁, 김순희 (2004). 『법과 사회』 교과서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7차 사회과 교육과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36(1), 83-100.
- 박성혁, 김현철, 심옥령, 전석재 (2005). **초·중등학교 법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개발 연구**. 서울: 법무부.
- 박용조 (2000). **법인식이론에서 본 한·미 양국의 초등학교 법교육**.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박용조 (2001). 사회과교육 목표에 대한 인식론적 고찰: 법교육을 중심으로. **사회과 교육**, 34, 264-285.
- 백인기 (2003).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개선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법무부 (2006). **우리나라 법교육의 발전방향: 선진 法文化 정착을 위한 생활속의 法教育 강화**. 서울: 법무부 법교육연구위원회.
- 법무부 (2007). 사법시험 합격자 통계자료. 홈페이지 <http://www.moj.go.kr/barexam> (검색일: 2007. 6. 11).
- 서울특별시교육청 (2002).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서울: 저자.
- 소경희 (2002).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생 선택권’의 의미와 구현방안 탐색. **교육과정연구**, 20(4), 87-106.
- 소경희 (2003). 2005년도 대입 전형을 고려한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방안. **경기교육**, 158, 61-68.
- 손홍숙 (2001). 학부제 유형과 대학교육과정의 변화. **교육학연구**, 39(4), 155-182.
- 안병경 (2006). 비행청소년 법교육 현황과 발전방향: 안양소년원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1(2), 135-161.
- 양운택 (2003).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진로지도 및 과목 선택지도 방안. **경기교육**, 158, 69-76.
- 유현아 (2005). **중등사회과 교사의 법인식 지향성과 법교육 실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이기우 (1993). 독일과 미국의 법교육. **사회와 교육**, 17, 49-68.
- 이수화 (2005). **사회과 법교육에 있어서 사례연구법의 효과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영대 (2002). 제7차 교육과정과 진로교육 강화방안. **경제교육연구**, 8, 221-241.

- 이영대, 임언, 이지연, 최동선, 김나라 (2004). **생애단계별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체계 수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이제경 (1997).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발달의 대학전공분야별 비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철희 (2002). **판례(사례) 중심 법교육이 고급 사고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현주 (2002).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물리과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혜심 (2004).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제2외국어 선택에 대한 교사·학생 인식 조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장문영 (2004). **대학생의 학과만족도, 귀인성향 및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정옥순 (2003). **고등학교 수학교과 심화선택과목과 대학전공분야와의 관련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조만택 (2002). **바람직한 진로선택을 위한 코스제 중심 통합형고등학교 운영**. **교육전남, 99**, 151-160.
- 주은옥 (2004). **사회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실행에 관한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7(1)**, 169-191.
- 진재관, 김민정, 김정호, 김학희, 박영석, 박은아, 박진동, 신항수, 오정준, 은지용, 장의선, 김진숙, 권영락, 함경림 (2006). **고등학교 사회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최기종 (2003). **학생들의 선호도 분석을 통한 제7차 교육과정 사회과 교과의 운영실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최인화 (1989). **사회과 법교육의 원리와 교수 전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최인화 (1992). **법교육과정의 적정성 탐색**.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최현순 (2003).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수학 교과목에 대한 편성·운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통계청 (2006). **한국의 사회지표**. 서울: 저자.
- 하혜숙 (1999). **대학생의 학과(학부)만족과 학교만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허종렬 (1992). **법교육의 목적과 원리에 관한 미국에서의 이론과 사례 연구**. **사회와 교육, 16**, 365-378.
- 허종렬 (1996). **미 사회과 법교육과정의 운영과 교사 양성체제**. **사회와 교육, 23**, 353-368.

- 홍후조 (2000). 교육과정 설계에서 ‘선택’의 실제적 의미에 관한 연구. **안암교육학연구**, 6(2), 155-201.
- 홍후조 (2002). 선택 ‘주체’ 위주의 선택 교육과정 설계의 문제점과 과제. **교육학연구**, 40(1), 177-195.
- 홍후조 (2005a). 대학 전공 학습을 위한 고교의 선수학습과목에 관한 대학생의 인식 조사연구. **교육과정연구**, 23(3), 257-288.
- 홍후조 (2005b). 일반계 고교에서 상이선택 교육과정의 실현방안 연구. **교육과정연구**, 23(4), 175-206.
- 홍후조, 박순경 (1998).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탄력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황규호 (2003). 교육과정 과목 편성에서의 균형과 선택. **교육과학연구**, 34(2), 237-252.
- Banks, J. A., & Megee Banks, C. A. (1999). *Teaching strategies for the social studies: Decision-making and citizen action* (5th ed.). New York: Addison Wesley Longman.
- Jarolimек, J. (1986). *Social studies in elementary school* (7th ed.). New York: Macmillan.
- Savage, T. V., & Armstrong, D. G. (1996). *Effective teaching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3rd ed.). NJ: Prentice-Hall, Inc.
- Swanson, J. L., & Fouad, N. A. (2005). **사례로 배우는 진로 및 직업상담** [Career theory and practice: Learning through case studies. Sage Publication]. (황매향 역). 서울: 학지사. (원저 1999 출판)

• 논문 접수 : 2007년 9월 1일 / 수정본 접수 : 2007년 10월 1일 / 게재 승인 : 2007년 10월 18일

ABSTRACT

The Effects of Elective-centered Curriculum on Department Satisfact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 by Focusing on 'Law Major College Freshmen Who Have Taken Law and Society' in High School

Minsik Choi(Assistant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Mimi Kim(Graduate Student,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learning experience of the subject 'Law and Society', a subject newly adopted as an intensive optional subject of the 7th national curriculum. Students in the 11-12th grades take intensive optional subjects as a part of elective-centered curriculum. The elective-centered curriculum is designed to give students various experiences in the subjects and expand students' right to choose subjects they study so that they can plan for their future career after graduation. We focus on this nature of the intensive optional subjects of elective-centered curriculum. Our main question in this study is whether students who have taken 'Law and Society' in high school are different from the other students who have not taken the course in terms of their satisfaction level in the major that they choose in college and their development of career seeking activity.

The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from surveying 457 law major college freshmen in 5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The data analysis was carried out in two different ways. The t-test was used to compare the two groups (those who have taken the 'Law and Society' and those who have not), and we used multivariate regression to check the robustness of the results from the first part.

We found two interesting results. Firs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terms of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ident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er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le the difference in students' satisfaction level in their major (law) was positive but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Second, when we took into account the fact that some students actually did not have the right to choose the subject because of the limited number of teachers of the high school they attend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ir career related scores as well as the major satisfaction level became bigger and all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uggests that students' right to select subject should be expanded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e elective-centered curriculum. Third, we also find that gender difference and student's experience of repeating in college entrance exam do not make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ajor satisfaction level and the other career-related scores between the two groups.

Key Words : elective-centered curriculum, intensive optional subject, law and society, major satisfaction level,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identit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